# 기업비밀보호규정

제 정 2010. 3. 15. 개 정 2012. 3. 7. 개 정 2015. 5. 6. 개 정 2017. 12. 5. 개 정 2018. 8. 22. 개 정 2023. 12. 29.

## 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관련법령(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) 및 규정(인사규정 등)에 근거하여 공사가 보유한 기업 비밀을 관계자 이외 또는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기업비밀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공사의 보안업무 관련 사규 및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기업비밀"이라 함은 누설 혹은 유출될 경우 공사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기술, 경영 상의 각종 정보를 말한다.
- 2. "기업비밀 1급"이라 함은 당해 임·직원(이하 "직원"이라 한다)만 알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유출 또는 누설 시 공사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경쟁사에 이익을 주게 되는 극히 중요한 기업 비밀을 말한다.
- 3. "기업비밀 2급"이라 함은 "기업비밀1급" 이외의 기업비밀을 말한다.
- 4. "총괄부서"라 함은 기업비밀을 총괄하고 각 처(실), 지사(사업소)의 기업비밀 관리에 대한 지도,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(보안담당부서)를 말한다.
- 5. "관리부서"라 함은 기업비밀을 직접 생산하거나 접수 등으로 보유 하게 된 기업비밀을 관리하고 있는 각 처(실), 지사(사업소)를 말한다.
- 6. "기업비밀관리책임자"는 각 부서의 부서장을 말한다.

#### 제4조 (기업비밀의 구분 및 분류)

①기업비밀은 그 내용의 중요도 및 가치에 따라 기업비밀 1급과 기업비밀 2급으로 구분한다.

②기업비밀은 기업비밀분류기준(별표1)을 참고하여 관리 부서장이 판단하여 분류하되,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업비밀 1급과 기업비밀 2급 외 관리 보호가 필요한 자료는 별도 기준에 따른다.

#### 제2장 기업비밀의 관리체계

### 제5조 (기업비밀관리위원회구성 등)

- ①기업비밀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의 설정과 주요지침의 수립 등을 위하여 기업비밀관리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-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과 간사를 둔다. 위원장은 경영전략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사 부서장 7인 이내로 하며, 간사는 총괄 부서장으로 한다.
-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.
-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관장한다.
- 1. 기업비밀관리제도의 연구, 발전
- 2. 기업비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의 설정 및 주요지침의 수립
- 3. 기업비밀관리방법의 결정
- 4. 기타 기업비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- ⑤위원회의 개최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한다.
- ⑥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**제6조 (총괄부서)** 기업비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비밀 총괄부서를 두어 다음 각호의 기능을 관장토록 한다.
  - 1. 기업비밀관리규정의 제정·개정(안)의 작성
  - 2. 기업비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
  - 3. 관리부서 등의 기업비밀관리업무에 대한 지도, 감독
  - 4. 기업비밀관련회의의 주관
  - 5. 이 규정에 의한 기업비밀관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
  - 6. 기타 기업비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총괄에 관한 사항
- 제7조 (관리부서) 기업비밀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기업비밀관리에 관한 세부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
  - 2. 이 규정에 의한 기업비밀관리업무의 수행
  - 3. 기타 기업비밀관리에 필요한 사항

## 제3장 기업비밀의 관리

#### 제8조 (서약서의 징구 등)

- ①관리부서장 및 인사담당부서장은 기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기존직원, 신규직원으로부터 서약서 [별지 제1호 서식]를 받아야 한다. 다만 퇴직자는 인사규정에 규정된 사직원으로 갈음한다. 퇴직자가 재취업시는 해당 기업에 기업비밀 협조문[별지 제2호 서식]을 통보 하여야 한다.
- ②계약담당부서장은 외부기관과 중요한 용역 및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동의서[별지 제3호 서식]를 징구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. 단, 중요한 용역 및 공사 계약은 계약

요청부서장의 판단에 따르며 계약의뢰시 동의서 징구여부를 표시하여 계약의뢰 하여야 한다.

#### 제9조 (기업비밀 및 보존기간의 표시)

- ①기업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기업비밀구분, 경고문, 사본번호 및 보존 기간을 표시(별표2)하여야 한다.
- ②기업비밀의 보존기간은 관리 부서장이 자료의 특성에 따라 일정 기간을 지정하며, 보존 기간 이 종료된 자료는 파기하거나 일반자료와 동일하게 취급·관리한다.
- ③기업기밀 구분(등급)은 표지의 중앙상단에 표시하며, 보존기간은 기업비밀구분(등급)밑에 표시하다.
- ④경고문은 표지의 우측상단 사본번호 밑에 표기한다.
- 제10조(기업비밀관리) 직원 및 기타 해당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1. 기업비밀의 관리는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지명한 기업비밀취급 담당자가 기업비밀관리기록부 에 등재·관리하여야 하며, 양식은 보안업무규정의 비밀관리기록부를 준용한다.
  - 2. 기업비밀의 유통은 보안업무규정의 비밀문서에 준한다.
  - 3. 문서나 유인물 등을 생산할 때에는 초안에서부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, 특히 기업비밀로 분류된 문서나 유인물 등을 생산할 때에는 초안지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.
  - 4. 기업비총밀은 사내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외주발간을 할 때에는 자료유출방지를 위해 입회 감독을 하여야 하며, 인쇄업체와 계약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계약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
  - 5. 기업비밀로 분류된 문서나 유인물 등은 배포처를 최소화하고, 필요한 부수만을 생산 및 배포 하여야 한다.
  - 6. 기업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복제·복사·통신·Fax등 어떠한 수단으로도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.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 유출시 기업비밀 1급은 사장, 기업비밀 2급은 당해 비밀 의 관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  - 7. 기업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서류함에 시건·보관하여야 하며, 외부인의 열람을 금한다. 다만,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인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장(기업비밀 1급 제외)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열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각서[별지 제4호 서식]를 받아야 한다.
  - 8. 중요회의 등 구두에 의한 기업비밀도 비밀준수 의무부과 등 별도의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기업 비밀 관리 대장에 기록 후 비밀문서에 준하여 관리한다.
- 제11조 (전산자원 관리) 기업비밀의 사외유출 방지 및 보증을 위하여 직원의 전산자원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, 백업할 수 있고 필요시 차단할 수 있다. 단, 직원의 개인정보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12조 (회의자료 관리) 기업비밀과 관련된 회의는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회의자료를 작성할 경우에는 제9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배포된 자료는 회의종료 후 즉시 회수하여 파기하되 부득이 배포시에는 제10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.

### 제13조 (정기점검 등)

- ①총괄부서는 기업비밀을 취급하는 각 부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점검결과 기업비밀이 훼손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③신입직원, 재직직원에 대하여 기업비밀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기업비밀 침해에 대한 조치

제14조 (기업비밀 관리 및 유출에 대한 조치) 직원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기업비밀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정보를 누설, 외부로 유출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및 제10조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는 계통 보고하여야 하며, 보고받은 관련 부서장은 즉시 전말 조사 후 위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엄중 조치하여야 한다.

제15조 (비밀누설에 대한 구제조치) 관리부서장은 주요 정보가 침해되거나 침해 될 우려가 인 정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동행위의 금지 또 는 배상청구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6조(세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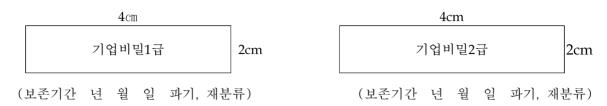
				부	칙
$\circ ]$	규정은	2010년	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		
				부	칙
া	규정은	2012년	3월 7일부터 시행한다.		
				부	칙
ं	규정은	2015년	5월 6일부터 시행한다.		
				부	칙
ो	규정은	2017년	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		_,
				부	칙
이	규정은	2018년	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	1.3	-1
				부	칙
$\circ$	규정은	2023년	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		

# 기업비밀 분류기준

	기업의 경영상 유출 또는 누설시 공사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			
	경쟁사에 이익을 주게 되고 당해 임·직원만 알아야 할 내용			
	□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			
	□ 기술개발 성과물			
	□ 천연가스시설의 유지보수 기술			
	□ 신에너지 사업 기술자료			
기업비밀 1급	□ LNG 저장탱크 설계관련			
	• 입찰견적서, 기술평가서			
	• 설계계산서, 공사설계서			
	• 설계기준서(Design Basis)			
	• 계통도면(PFD, P&ID)			
	• 계약서 등			
	□ 기타 일정기간 기업비밀 1급으로 유지하여야 할 사항 등			
	기업의 업무수행상 보호를 요하며 대외유출 또는 누설시 회사경영에 지장을			
	기업의 업무수행상 보호를 요하며 대외유출 또는 누설시 회사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내용			
	초래하게 되는 내용			
	<b>초래하게 되는 내용</b> □ 사내 기술 표준			
	<b>초래하게 되는 내용</b> □ 사내 기술 표준 □ LNG 저장탱크 설계관련			
기업비밀 2급	초래하게 되는 내용 □ 사내 기술 표준 □ LNG 저장탱크 설계관련 • 각종 사업관련 절차서 등			
기업비밀 2급	초래하게 되는 내용 □ 사내 기술 표준 □ LNG 저장탱크 설계관련 • 각종 사업관련 절차서 등 • 계통도면(PFD, P&ID)을 제외한 기본 설계도면/문서			
기업비밀 2급	초래하게 되는 내용 □ 사내 기술 표준 □ LNG 저장탱크 설계관련 • 각종 사업관련 절차서 등 • 계통도면(PFD, P&ID)을 제외한 기본 설계도면/문서 • 기본설계도면/문서를 제외한 도면/문서			
기업비밀 2급	초래하게 되는 내용 □ 사내 기술 표준 □ LNG 저장탱크 설계관련 • 각종 사업관련 절차서 등 • 계통도면(PFD, P&ID)을 제외한 기본 설계도면/문서 • 기본설계도면/문서를 제외한 도면/문서 (기계, 배관, 전기, 계장, 토목, 건축, 소방 상세도면, 사공사양서, 기술 검토 보고서 등)			
기업비밀 2급	초래하게 되는 내용 □ 사내 기술 표준 □ LNG 저장탱크 설계관련 • 각종 사업관련 절차서 등 • 계통도면(PFD, P&ID)을 제외한 기본 설계도면/문서 • 기본설계도면/문서를 제외한 도면/문서 (기계, 배관, 전기, 계장, 토목, 건축, 소방 상세도면, 사공사양서, 기술 검토 보고서 등) • 시공사용 도면, 문서			
기업비밀 2급	초래하게 되는 내용 □ 사내 기술 표준 □ LNG 저장탱크 설계관련 • 각종 사업관련 절차서 등 • 계통도면(PFD, P&ID)을 제외한 기본 설계도면/문서 • 기본설계도면/문서를 제외한 도면/문서 (기계, 배관, 전기, 계장, 토목, 건축, 소방 상세도면, 사공사양서, 기술 검토 보고서 등) • 시공사용 도면, 문서 • 공급자 도면/문서			

## [별표2]<개정 2018.8.22 >

#### □ 기업비밀의 표시방법



#### □ 경고문의 표시

ㅇ "기업비밀 1급"의 경우(규격은 자료의 형태에 따라 조정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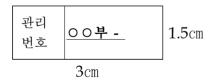
본 자료는 기업비밀1급으로서 관련 임, 직원외 타인의 열람, 취급과 외부 유출, 반출을 금하며, 위반시에는 사규에 의거 처벌됩니다.

- \*표지상단 우측 사본번호 밑에 표기
- ㅇ "기업비밀 2급"의 경우(규격은 자료의 형태에 따라 조정함)

본 자료는 기업비밀2급으로서 사전 승인 없이는 외부인의 열람, 취급과 외부 유출, 반출을 금하며, 위반시에는 사규에 의거 처벌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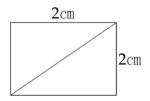
\*표지상단 우측 사본번호 밑에 표기

#### □ 관리번호 표시



표지상단 좌측에 표시

#### □ 사본번호 표시



표지상단 우측에 표시

## 기업비밀 보호서약서

성 명 생년월일 주 소

본인은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년 월 일부로 근무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공사의 기업비밀보호규정, 정보통신관련내규 및 산업재산권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- 2. 공사의 기업비밀을 공사의 서면 허락없이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- 3. 공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- 4. 공사의 기업비밀 보호, 내부정보 유출차단 등을 위한 각종 정보보안 정책을 성실히 준수할 것과 이메일 저장 등에 동의함을 서약 합니다.
- 5.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사의 기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하는 등 본인, 공사와 경쟁업자 또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. 이를 위반할 시는 관련 법률 및 사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.

#### 가. 인 사 규 정

제40조(비밀엄수의 의무) 공사의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입사일 년 월 일

## 기업비밀 협조 통보

성 명 : 생년월일 :

주 소 :

귀 사의 사업이 번창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.

위 사람은 당사 oo부서에서 근무하면서 ooo에 관한 당사의 기업비밀을 지득하고 있는 자로서 20 . . . 당사를 퇴직하면서 당사의 기업비밀을 준수하고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바 있습니다. 만약 위의 사람이 귀사에서 본인이 지득한 기업비밀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 종사하게 되면 당사의 기업 비밀의 침해와 위 사람의 민·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통보 드립니다.

20 . .

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(인)

000 주식회사 사장 귀하

[별지 제3호 서식]<개정 2015.5.6>

## 동 의 서

성 명 : 국 적 : 생 년 월 일 : 소 속 회 사 : 계 약 명 :

- 1. 위 본인은 한국가스기술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와 체결한 계약사항을 이행하면서 취득한 공사의 기업 비밀에 해당되는 일체의 사항을 계약 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회사의 동 의 없이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,
- 2.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·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 겠음을 동의 합니다.

년 월 일

서 약 인 : (인)

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

# 각 서

성 명: 생년월일: 직 급: 소속 및 직위:

위 본인은( ) 함에 있어 기업비밀을 열람한 후 한국가스기술공사 기업비밀보호규정 및 부정 경쟁방지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, 업무 취급상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 대인관계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공사의 동의 없이 누설 및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민, 형사상의 책 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하며,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.

20 . . .

서 약 자: (인)

입 회 자 소속 및 직위 :

성 명: (인)

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